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국제적 환경손상 - 환경안보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검토 - *

모 영 동*

〈요 약〉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2S1A3A2033974)

**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SSK 미디어법 사업단 박사후연구원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국가안보, 환경손상, 국제기구, 국제환경, 환경안보

목 차
<p>I. 논의의 필요성: 국가안보와 환경</p> <p>II. 국제적 환경손상과 국가안보: 이론과 사례</p> <p>III.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안보의 실현</p> <p>IV. 결론: 환경안보에 대한 다차원적, Transnation적 접근</p>

I. 논의의 필요성: 국가안보와 환경

인류가 생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반은 환경이다. 이 필수적인 환경을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 번영이 전 지구적으로 널리 파급되면서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인 환경이 오히려 파괴되면서 각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번영을 위한 발전이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축적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증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치유하기 힘든 대기 및 해양오염을 겪고 있고, 경제성장에서 비롯한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남획과 남벌이 불러오는 생태계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은 생물에 의한 테러 위협까지 가져오고 있어 환경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환경을 매개로 하는 위협마저 발생하고 있다. (정육상, 2010)

국가안보와 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 두 개념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국의 환경손상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환경손상이라는 결과가 국경을 넘어 타국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 타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일본

자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제 인근 국가인 한국의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예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오늘날 중국을 가장 큰 오염국으로 만들었다. (Economy, 2007)

인류의 생존 기반인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인간이라는 역설적 사실은 반대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규제하면 인류의 생존 기반인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류의 생존 기반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규제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인류의 행위는 환경 파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행위 중 특히 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오염행위가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데 국제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오염원 국가는 자국 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규제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이기를 주저하며, 피해국이 오염원인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성재호, 2001) 둘째, 국제적 환경오염이 국가만을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점, 셋째, 일국의 영역 또는 국제공역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활동에서 국제적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국제법을 통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규제 방안을 시도해 왔는데 이러한 시도 중에는 교토의정서에서 사용된 유연성체제 (flexible mechanism)와 같이 경제적 유인 (economic incentive)을 이용한 시장적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침 2004/35/EC, 2008/99/EC와 같이 환경손상을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엄격한 방법도 시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법이라는 규범체제가 그 실효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환경문제를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환경 對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개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Brunce,1994-1995) 환경손상을 경제적 개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환경법의 기반으로 평가받는 Brundtland 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등장한 지속적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Brundtland보고서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또 공통의 관심사로서 지속적개발을 제시한 것에서 나타난다.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ited Nations, 1978)

본 논문에서는 환경이 국가의 생존에 기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문제를 경제 성장과 개발이라는 개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존의 국제환경법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즉 환경 對 개발이라는 구도를 뛰어넘어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국제환경문제에 접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국제적 환경손상과 국가안보: 이론과 사례

1. 국가안보와 국제법

국가안보의 개념과 정의는 주로 정책입안자나 안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 정의는 광범하고 유동성 있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등장할 때 마다 변화해 왔다. 실제로 국가안보는 다양한 형태로 위협받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위협이 가해지는 등 그 범위는 확대되었다. (장석현, 이대성, 2011)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정의를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국가안보가 법학에 있어서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법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존재해왔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내부의 불안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는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주권, 전쟁, 불간섭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Hulme, 2008)

국제법 형성의 초기 단계인 16세기에 이미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¹⁾ 초기 국제법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되는 빅토리아(Victoria)는 그의 저서 'De Indis De Jure Belli'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빅토리아는 국가안보를 국가의 물질적 번영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하였고, 전쟁의 목적 역시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빅토리아의 논의 중에서 주목할 것은 장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징벌적(懲罰的) 수단을 통하여 적국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빅토리아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Victoria)

1) 국가안보에 대한 법학적 접근의 유래는 더욱 오래되었다. 키케로(Cicero)는 기원전 51년 그의 저술 'Treaties on the Laws'에서 법의 존재 이유가 공동체의 안보(security)와 보전에 있다고 한 바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국제법학자 바텔(Vattel)은 안보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안보를 법적 권리로서 구체화 하게 된다. 바텔은 그의 저서 the Law of Nations에서 안보에 대한 권리(right to security)를 모든 종류의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존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안보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가진다고 하였다. 바텔이 안보에 대한 권리를 정의 내리는데 있어서 이야기한 모든 침해로부터의 보존은 국가의 완벽성, 행복, 보존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력, 사유재산침해가 모두 안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텔은 안보에 대한 권리를 자연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로서 파악하고 문명사회의 목적을 안보에서 찾았다. 안보에 대한 권리를 권원(權原)으로 하여 자국에 대한 침해와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저항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전쟁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정전론(正戰論)과 연결되는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안보에 대한 권리에서 피해국에게 침해국으로부터 완전한 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면 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Vattel,1797)

안보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와 관심은 1945년에 채택되어 국제사회에서 헌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반영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前文은 선량한 이웃으로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고 노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설립한다는 것을 천명하였으며 국제연합헌장 제 2조 3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 동 조 4항에서는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도록 하는 것을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제 33조 1항에서 어떠한 분쟁이라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국제법상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구인 국제연합의 목적을 안보에 둬므로서 안보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원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환경안보이론의 등장

환경을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평가하였던 환경을 인류 생존기반으로 바라보게 한 대량의 오염사고와 자원고

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배경으로 Brunnee(1994-1995)는 환경을 개발에 대한 안티테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생명유지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문제를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가 안보론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적 안보로 범위를 넓히게 되어 국제경제를 안보의 개념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각국 경제가 가지는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국가의 경제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져 각국이 예전과 같은 독립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국제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Jessica Tuchman Mathews, 1989) 이렇게 국제경제가 안보 개념 속에 포함되는 현상과 함께 국가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Rothschild(1995)는 이러한 현상을 안보개념의 전방위적확산이라고 정의 내렸다. Rothschild에 의하면 안보개념은 국가차원에서 시작하여 국제사회나 국제기구 등으로 상향적 확산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하향 확산 그리고 언론기관, 비정부기구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등과 같은 수평적 방향으로의 확산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윤민우(2011)는 국가내의 소수의 정치 권력 엘리트 뿐만 아니라 경제 엘리트,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세력, 시민사회, 미디어 등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주체로 인하여 현실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Rothschild의 전방위적확산을 행위주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민우는 이러한 예로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예로 들었는데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의 제어라는 고려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지의 환경문제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박준석(2008)에 의하면, 한국 역시 북한과 외부로부터의 위협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인위재난, 테러, 대규모, 시위, 국가경제 정부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국가 위기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역시 전통적 국가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의 예시로 볼 수 있다. (박준석,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17호, p.169) 이러한 안보개념의 확산은 이제 다차원 안보위협 혹은 융합안보의 발전하고 있다. (윤민우, 김은영 2012)

이러한 안보개념의 전방위적 확산의 맥락에서 환경을 국가안보 개념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도는 Lester Brown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Brown(1978)은 국가안보를 국가

對 국가의 관점에서 파악하던 종래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對 자연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Brown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식량부족, 자원고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위협은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변환되고 사회적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 석유매장량의 고갈, 벌목으로 인한 삼림지역의 축소, 남획으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초지(草地)의 손실을 예시하였고 이렇게 환경손상에서 기인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각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을 통해서 환경에서 발생하는 국가안보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Brown, 1978) 국가안보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환경손상 역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새롭게 정의 내리려는 시도로 이어지는데 새로운 정의는 환경손상 특히 자국의 영역 밖에 원인을 둔 환경손상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포함시키게 되었다. (Ullman, 1983)

3. 환경안보 개념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

전통국제법에서 환경손상을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파악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물질적 번영에 대한 침해와 국가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국가안보의 침해로 보았던 수아레즈와 바텔의 논의를 고려할 때, 물질적 번영과 완전성의 기반이 되었던 환경을 국가안보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안보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는 20세기에 이르러 구체화된다. Hulme(2008)은 환경안보의 개념을 뚜렷한 경계가 없는 개념으로 보았지만, 국가안보를 환경안보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질병, 가뭄, 홍수, 허리케인, 산업공해, 환경손상, 자원부족 등을 환경안보의 형태로 보았다. Bruncce는 환경안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첫 번째가 환경적 측면에서의 이해로 안보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원공급과 생존유지장치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환경이 이행하고 있을 때 안보가 보장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안보를 위협하므로

환경손상을 방지하고 통제함으로써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이 국제환경법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환경안보의 개념에 대한 인정이 국제환경법을 새롭게 해줄 것으로 보았다.

환경을 안보와 연관시킨 국제법적 논의는 지속적 개발을 제시한 브룬트란드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rundtland보고서는 제 11장 Peace, Secur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에서 환경적 긴장을 분쟁을 야기하는 단일 요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환경적 긴장이 절절히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분쟁의 원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위협 뿐만 아니라 환경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경안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정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안전보장이사회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결의안 687/1991을 통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하여 환경에 입힌 손상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Sands, Peel 2013). 다음해에 정부수반 회의에서는 비군사적 원인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생태적 분야에서의 불안정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1992년 천명된 리오선언은 원칙 25에서 평화와 개발 그리고 환경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밝혀 안보와 환경보호의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국제법이 환경을 국가안보의 개념 속에 포함하여 환경안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법 초기이론과 연관시켜 고려하였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Hume과 Bruneau가 주장한 환경안보의 개념속에서 환경은 자원공급과 생존유지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병, 가뭄, 홍수, 허리케인, 산업공해, 환경손상, 자원부족이 생길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의 물질적 번영과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본 수아레즈나 바텔의 이론과도 합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경합을 볼 때 환경은 분쟁의 원인이 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미 국가 간의 긴장을 촉발하고 있다. (Zweig, Jianhai, 2005) 이러한 국가간의 긴장은 외부로부터의 국가안보의 위협 그리고 국제간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에 해당한다. 즉, 국제환경손상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협은 국제연합헌장상의 국제안보와 평화에 해당하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4.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의 실제

1) 기후변화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손꼽히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발생한 기후체제의 손상인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도서 국가들에게 있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토의 손실과 침몰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티, 마셜군도와 같이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중인 도서 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종국적으로 국가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UNHC) 이것은 환경손상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의 가장 극단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UNFCCC(2008)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변경은 인구의 이동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는 국가안보에 대한 커다란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1미터의 해수면 상승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를 물밑으로 가라앉게 할 것이며 일본은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물에 잠기고 있는 지역에 4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109조엔의 자산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안나 브레텔, 동북아 환경협력:대기오염문제, 현인택, 김성한, 이근 공편, 동아시아환경안보, 오름 2005, pp.87-88)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재배분 문제 역시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담수자원의 위치 변경, 경작 가능한 농경지의 변화, 해안선의 변화 등은 국가 내부의 자원배분 문제와 직결되어 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Purvis, Busby) 그러나 이렇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은 국가들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골격협약은 이에 적합한 체제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ulme)

2) 원자력과 핵폐기물

전 세계 31개국에서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만여 기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윤태영, 2011) 1979년 미국의 Three Mile섬 핵원자로 사건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방사성물질 유출 사건은 핵물질이 인류의 건강, 환경 그리고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건의 경우, 폭발후 36시간내에 10만명 이상이 원자로 주변에서 대피해야 했으며 13만 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명준, 2003, pp. 222-223)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후에도 핵발전소에서 야기된 사고는 계속되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또 다른 환경 손상의 예를 보여준 경우로 원자력 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보안 조치의 난이성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봉석, 구지선 2012)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의 경우 냉각기능 복구를 위해 투입된 바닷물등에 의하여 형성된 고농도 오염수가 해양으로 직접 유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고 당시 후쿠시마만 원전 앞바다의 방사능 요오드 오염도는 기준치의 3,355배에 이르고 세슘 기준치 역시 80배에 이르러 해양오염이 해류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고려할 때, 일본의 안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를 통하여 오염물질이 전파되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최봉석, 구지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동아시아에서 더욱 시사점을 갖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바다를 통하여 연결되어 오염물질이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황해와 동해 모두 반폐쇄해(semi closed sea)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배영자(2005)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로는 주로 황해와 동해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다고 한다. 황해와 동해에 위치한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 시 해양을 통하여 자국의 해양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환경전체에 장속적인 환경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폐기물 역시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핵폐기물의 국경이전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97년 1월초 북한은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 내에서 처리하는 대가로 약 2억 3천만 달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만 내에서 핵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만전력은 환경적 연구수행을 거절하고 편이성을 이유로 서울에서 약 90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평산 근처의 폐광산을 폐기장소로 선택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당시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지 못한 것을 파악되어 20만 배럴의 핵폐기물이 폐광산에 매립되어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성재호, 1996)

3) 자원부족

Brown(1978)은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석유매장량의 감소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은 석유매장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biological security라 불리는 생물안보개념이 인정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서식지파괴와 종다양성 상실이 인류 전체의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였다.(Sands,1991) 불법벌목은 환경에 다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樹木이라는 種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감소하고 축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림을 감소시키고 있다. 여기에 삼림 주변에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지키면 살아오던 원주민들의 공동체 환경까지 파괴하는 환경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벌목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다면적 위협은 벌목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 벌목한 목재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떤 운송방식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같이 벌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과 결부되어 있다. (Nellemann, 2012) 이러한 이유로 주요한 국제범죄 중 하나로서 세계은행과 인터폴 (2008)은 전 지구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벌목을 꼽았는데, 매년 불법벌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유실은 100억 USD에 해당하며 밀무역을 통한 세금포탈과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도 50억 USD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은행(2006)은 추산하고 있다. 불법 벌목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환경파괴를 가져오는데 INTERPOL NCB Rome은 해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 크기의 삼림이 불법벌목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터폴과 세계은행(2008)은 전 세계 시장에 있는 목재 생산품의 20-50%가 불법 목재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슈레즈(2005)는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한국 전쟁 이후 역내 국가 사이에 발생한 가장 심각한 적대관계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꽃게 포획권은 남북한 사이의 어업 분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은 1953년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였고,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과 한국 경비정과의 대치는 전형적인 갈등의 형태였다고 한다. (슈레즈, 2005) 서해의 백령도와 연평도는 한꽃게 수획의 60-70%를 차지 하는 곳으로 꽃게잡이 기간에 남북한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며 최근

에는 중국어선의 무단 침입과 조업이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윤이숙, 2009)

4) 오존층 파괴물질 불법거래

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중 주를 이루고 있는 CFCs (Chloro-fluorocarbon)와 HCFCs (hydrochlorofluorocarbon)의 불법거래 역시 국제환경범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몬트리얼 의정서는 가장 성공한 환경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오존층 파괴물질의 밀수가 등장하여 대체화학물질 시장을 위협하면서 체제의 실효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Banks, 2008) Banks는 연구결과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 불법거래는 1995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CFCs에 대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불법거래업자들은 CFCs를 밀반입하여 판매하여 큰 차익을 얻었고, 재활용된 CFCs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몬트리얼 의정서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로 생산된 CFCs를 재활용 CFCs로 신고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Banks의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된 오존층 파괴 물질들이 암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 2005년 중국산 오존층 파괴물질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디아 쿠웨이트 태국, 그루지아에서 발견되었고, 중국에서의 생산은 1998년 이후 계속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Banks는 이러한 밀무역은 몬트리얼 의정서가 설립될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몬트리얼의정서 체제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라는 환경손상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농작물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국제안보 뿐만 아니라 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Ⅲ. 국제기구에 통한 환경안보의 실현

1. 국제연합에 의한 실현

국제연합 헌장 24조 1항은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와 함께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국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것이 보장되고 있다. (김정균, 성재호, 2005) 또한 헌장 제 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엇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적 평화 안보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제 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 헌장이 환경안보 즉 환경손상에 의한 국제평화와 안보가 훼손되었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장 상 조문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헌장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이들은 환경안보는 국제연합의 헌장을 개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Parkin, 1999:45)

이러한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국제연합 헌장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환경손상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개입은 불가능한 것인가? 헌장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보장이사회가 환경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국제사법법원 대법관이었던 Roslyn Higgins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Roslyn Higgins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헌장의 조문은 시대의 필요에 적합하게 창조적이면서 합법적으로 변화해왔다고 한바 있는데 이는 헌장을 해석에 있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국가실행,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의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 (Elliott, 2003) 그러므로 국제연합에 의한 환경안보의 실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국제법과 국제연합의 결정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환경분쟁에 의하여 야기된 국가간 분쟁이 존재할 경우 헌장 39조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원인이 되었는지의 여부 즉 환경안보의 문제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이 아니라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혹은 파괴가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외부에서의 위협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 생각할 때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Elliott, 2003) 이러한 측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국이 범한 환경손상이 지금은 비록 원인국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후일에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손상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서 각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국가의 동의 없이도 개입해 왔는데 이 근거 중 하나로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들고 있다.(UN Resolution 794).

국제인도법의 실제적 협약 중에서 먼저 헤이그협약을 살펴보면 헤이그 협약 그 자체는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약 제 23조(g)에서 군사적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적산(敵産)의 파괴 및 포획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55조에서 점령국이 적국 소유나 피점령지의 공공건물, 부동산, 수림 농경도구의 관리자 및 용익권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의무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재호, 1996) 1949년 제네바 4협약은 전시 민간인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55조는 식료품 및 의약품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 56조는 점령국으로 하여금 공공보건 및 위생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간접적 효과로서 규정하고 있는 위의 협약들과 달리 제네바 협약 제 1 의정서는 환경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재호, 1996) 제 1의정서 제 35조 1항은 무력충돌시 전투수단에 대한 교전국의 선택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제 2항에서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도록 의도하거나 예측되는 전투수단 및 방법은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동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광범’(廣範)은 수백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지역을 의미하고 장기(長期)는 10년 혹은 그 이상을, 심각한 손상은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인의 생존에 영향 미치는 손상 혹은 주요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재호, 1996)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위와 같이 엄격한 적용범위로 인하여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국제환경범죄를 인도에 대한 범죄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의 파괴를 제노사이드 협약 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노사이드 협약 4조는 “deliberately inflicting on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Marsh Arabs와 같이 특정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거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습지(Marsh)환경의 파괴는 동 조항의 위반으로 국제환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Marsh Arabs 사건을 살펴보면 1991년 걸프전 이후에 Marsh Arabs과 남이라

크의 시아파들이 후세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동을 일으키자 후세인 정부는 Marsh Arabs의 생활터전인 습지대를 고사시키는 댐과 방둑, 운하를 건설하여 현재는 오직 7퍼센트의 습지대만 잔존하게 되었다. (Schwabach, 2003) Schwabach는 이라크 정부의 이러한 습지대 고사는 제노사이드 협약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deliberately inflicting on group condition of life에 해당하므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강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제연합이 개입할 근거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형사법원 규정 7조 1항 d는 강제이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 규정은 뉘른베르크 헌장 6조 c항과 도쿄헌장 5조(c)항에 근거한 것이다. (Werle, 2009) 국제형사법원 규정 7조 2항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강압적인 행위나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적인 이동이 국제법적 정당성 없이 이루어졌을 때를 강제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5,000여명의 회교 보스니아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을 때 구유고형사법정은 인도에 대한 범죄로 결정한 바 있다. (Prosecutor v. Krstic) 동 법정은 군사적 위협이 현존하지는 않았지만 공포의 분위기는 회교 보스니아인들을 강제 이동시키려는 조직된 정책으로서 보스니아인들의 강제 이동 또는 추방이 목적이었음을 잘 증명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지할 것은 동 법정이 ‘강제’의 의미를 물리적 무력에 한정짓지 않고 폭력에 대한 공포에 의한 위협까지도 즉 심리적 압박까지 확대하였다는 사실인데 법정은 회교도 보스니아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강제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을 논리를 따르다면 거주민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거주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위협이 된다면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국가안보의 실현은 국제연합을 통한 실현과는 다른 모습을 띤다. 국제연합에 의한 안보의 실현이 국가 對 국가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국제금융기구와 후술할 인터폴의 경우에는 좀 더 개인, 국제기구, NGO등의 비국가주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비국가주체에 의한 국가안보의 위협은 범죄의 모습을 등장하게 되는데 국제환경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몬트리얼 의정서가 설립될 당시 몬트리얼 의정서의 규범적 허점을 이용한 CFCs 불법거래가 등

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국제환경범죄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주체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international적 방식의 대응에서 transnational적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심에 국제금융기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를 통한 transnational적 공조체제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은 사이버 범죄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는데, 국제연합과 G8, 유럽이사회 등 국가 간 협력체나 국제 기구 등을 통한 형사재판관할권의 확정과 형사사법공조의 방식으로 이미 채택한 바 있다.(정정일, 2005)

세계은행그룹은 야생동물과 희귀한 자연자원이 환경범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환경범죄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진단하고 방지를 최선 방법으로 삼아 노력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야생동물과 관련된 환경범죄가 연간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헤로인이나 불법소프트웨어 시장을 상회하는 액수로 산정되고 있다. (World Bank).

세계은행의 첫 번째 접근방법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각국의 환경범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일례로 서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있는데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라이베리아 정부가 로운 환경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지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어획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도 하였는데 기술 지원으로 인하여 위성감시 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 라이베리아 정부는 불법어로 선박의 나포와 벌금을 통하여 불법어로 활동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175,000 USD에 달하는 벌금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World Bank, 2013) 재정 기술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역량구축 사업은 법률체제 구축 뿐만 아니라 법집행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각국의 사법역량을 높여 환경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World Bank)

세계은행의 두 번째 방법은 환경범죄를 통하여 발생하는 자금 세탁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통하여 환경범죄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환경범죄 척결을 위하여 자금세탁 경로를 차단하거나 이를 차단하는 입법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불법 벌목이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환경범죄자들의 계좌를 동결시키도록 하고 있다.(Setino, Hussein, 2005) 자금세탁 경로를 억제하는 방법은 환경범죄를 지지하는 범죄단체의 가장 큰 목적인 금전적 이익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불법거래를 통하여 올린 경제적 이익이 합법화되는 경로를 차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터폴

환경범죄는 인터폴의 주요 활동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인터폴은 독자적인 노력 이외에도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인터폴은 환경범죄를 야생동물분야, 국제오염 분야 등으로 나누어 대처하고 있으며 국제오염분야는 폐기물의 수출입, 위태로운 물질의 배출, 오존층 파괴물질의 이동 등으로 나누어진다. 인터폴은 각국의 경찰을 연계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서 이러한 환경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Interpol, 2013) 인터폴의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은 크게 환경범죄 배후에 있는 범죄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국제사법집행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설립하며, 각국의 사법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Interpol, 2013)

특히 인터폴의 국제공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 38조 1항을 근거로 하여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인 증명 및 전과 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로 규정되어 있다.(김재덕, 2011) 그러나 실제로 인터폴의 국제공조는 이것보다 더욱 큰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폴은 야생동물에 관련된 범죄를 막기 위해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사무국,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DOC), the World Bank,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과 International Consortium on Combating Wildlife Crime (ICCWC)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ICCWC를 구성하여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한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환경범죄가 이루어지는 착수 시점부터 국제환경범죄로 인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최종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V. 결론: 환경안보에 대한 다차원적, Transnation적 접근

환경손상으로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때 얻을 수 있는 인식은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환경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인 이행 방법에 있어서의 실효성 부족이 이러한 개발에 대한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로서 환경을 인식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을 준다. 그러나, 환경안

보로서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기존의 전통적 안보개념과는 다른 다차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위협 특히 타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평면적 위협이었으나, 이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다차원적이다.(윤민우, 김은영, 2012)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은 위협 주체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위협요소가 정치적, 군사적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이라는 또 다른 요소를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다차원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차원성은 국가안보 개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에서도 이러한 다차원성은 발견되는데 전통 국제법에서 행위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를 넘어서, 비국가단체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여기에는 다국적기업, NGO, 개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국적 범죄집단은 이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P. Jessup이 그의 저서 *Transnational Law*에서 주창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일맥 상통한다. Jessup(1956)은 국제법의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개인, 국제기구로 확대시켰는데 국제사회의 문제가 국제법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 개인 국제기구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국가만을 주체로 보는데서 찾았던 것이다. 즉, *Transnational*적 문제를 *International*적 체제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Jessup, 1956) 이것은 환경안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똑 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國家對 國家의 관계에서 비롯된 전통 국제법 체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차원적 국제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다. 이것은 환경안보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국가 대 국가 방식의 산물이 국제연합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차원적 안보체제의 개념은 결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전통적인 국가주체의 타국으로부터 무력행사라는 단일한 위협으로부터 다양한 주체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 보고 새로운 대응책을 찾는 것이라면 *Transnational law* 역시 국가를 주체로 하였던 국제법에서 다양한 주체를 국제법의 주체로 보고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다차원적 안보와 *Transnational law*는 상호 공통분모를 가진 개념으로 보여 진다. 환경안보라는 다차원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기존의 *international law*적 체제를 벗어난 *transnational law*를 통한 대응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재덕, (2011)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Vol. 27. No3.
- 김정균,성재호 (2005), 국제법, 박영사
- 노명준 (2003),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 박준석 (2008),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17호,
- 윤민우 (2011), 국제조직범죄의 전통적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 범죄학 제5권 2호
- _____ 김은영 (2012) 다차원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 윤이숙 (2009), 국방연구 제 52권 제 1호
- 윤태영 (2011).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경호경비학회, 26.
- 성재호 (2001), 인접국 오염원에 의한 환경피해의 국제법적 구제, 국제법논총 제46호 제2권 (통권 제90호),
- _____ (1996), 무력충돌시의 환경보호, 인도법논총, Vol. 16
- _____ (1999), 핵폐기물의 국경이전에 대한 국제적 규제, 저스티스 제32권, 제 1호
- 슈레즈 (2005),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현인택 김성한 이근 공편, 동아시아환경안보, 오름 출판사
- 장석현,이대성(2011),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 제 28호, p. 173.
- 정육상 (2010),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 22호, p. 114.
- 정정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0 (2005)
- 최봉석,구지선, (2011)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3권 1호

2. 외국문헌

- Banks (2008), Davies, Gosling, Newman, Rice, Wadley, Walravens, *Environmental Crime: A Threat to Futur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 Brown (1978), Redefining National Security, *EPA Journal*, Vol. 4.

- Bruneo (1994-1995) Environment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8.
- Economy (2007), The Great Leap Backward?: The Costs of China's Environmental Crisis, *Foreign Affairs*, Vol 86, No. 5, pp.38-59.
- Elliot (2003) Imaginative Adaptations: A Possible Environmental Role for the UN Security Council,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24, No2.
- Hulme (2008), Environmental Securit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in Ole Kristian Fauchald, David Hunter, Wang Xi,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19.
- Jessica Tuchman Mathews, Redefining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68, No2 (Spring, 1989)
- Jessup (1956), *Transnational Law*, Yale
- Nellemann (2012), *Green Carbon, Black Trade: illegal Logging, Tax Fraud and Laundering in the Worlds Tropical Forests*, INTERPOL Environmental Crime Programme (eds)
- Parkin (1999), Environment and Security: Issues and Agenda, *Disarmament Forum*, No.1.
- Purvis, Busby (2005) *UN and Environmental Security Policy Brief,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the UN System*,
http://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ecspr10_unf-purbus.pdf
- Rothschild (1995), What is Security, *Daedalus*, Vol. 124, No. 3, The Quest for World Order
- P. Sands (1991), International Law on the Agenda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owards Global Environmental Security?,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0. No.5.
- _____(2013),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Cambridge
- B. Setiono, Hussein (2005), Fighting Forest Crime and Promoting prudent banking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Occasional Paper No. 44*, The Anti Money Laundering Approach,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 Schwabach (2003), Ecocide and Genocide in Iraq: International Law, the Marsh Arabs, and Environmental Damage in Non-International Conflicts,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 15(1).
- Spinedi (1989), International Crimes of State; The Legislative History, in Weiler, Cassese, Spinedi (ed), *International Crimes of State: A Critical Analysis of the ILC's Draft Article 19 on State Responsibility*
- Ullman (1983), Redefining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8. No.1
- UNHC (2009), *Climate Change and Statelessness: An Overview*,
<http://unfccc.int/resource/docs/2009/smsn/igo/048.pdf>

Vattel (1797), *The Law of Nations*, reprinted liberty fund 2008

Victoria (1532) *De Indis De Jure Belli*

Werle (2009),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2nd edition, T.M.C. Asser Press

Zweig, Jianhai (2005), China's Global Hunt for Energy, *Foreign Affairs*, Vol 84, No. 5, September/October 2005

3. 기타자료

Prosecutor v. Krstic,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Former Yugoslavia since 1991, IT-98-33-T, (August 2, 2001)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curity Council in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 Doc. S/23500, 31 Jan. 1992, 2.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NVIRONMENT/0,,contentMDK:23264957~menuPK:2643897~pagePK:64020865~piPK:149114~theSitePK:244381,0.html> (2013년 7월 20일 방문)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NVIRONMENT/0,,contentMDK:23264957~menuPK:2643897~pagePK:64020865~piPK:149114~theSitePK:244381,0.html>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NVIRONMENT/0,,contentMDK:23264957~menuPK:2643897~pagePK:64020865~piPK:149114~theSitePK:244381,0.html> (2013년 5월 20일 방문)

<http://www.interpol.int/Crime-areas/Environmental-crime/Environmental-crime> (2013sus 9월 22일 방문)

【Abstrac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

Moh, Young-Dawng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

Key words :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Transboundary Harm, International Environment